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. 5. 29 선고 2019가단807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주식회사 B(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)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5. 29.

주 문

1.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1995. 7. 5. 접수 제3118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00. 7. 12. 접수 제29192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(무변론 판결)

3. 일부 각하

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양수인을 상대로 한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(대법원 1995. 5. 26. 선고 95다7550 판결 등 참조).

판사전경호

별지